

노동자 취급, 자영업자 대우의 프리랜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 이는 다음 국어사전과 한국 위키백과에 나오는 프리랜서의 정의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종사상지위에도, 산재보험법에도 규정이 없는 용어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 포함되거나 기본적으로 자영업자(self-employed)나 전문직 자영업자로 알려져 있다.

어느 국가에서도 프리랜서를 공식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자영업자 가운데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히 전문직 자영업자를 프리랜서에 가까운 개념으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프리랜서의 범주에 넣어도 좋을 듯 싶다.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3년 8월 부가조사 결과로 볼 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244천 명이고, 이 가운데 관리자·전문직이 557천 명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45천 명, 이 가운데 전문직이 74천 명이다(관리직은 없음). 따라서 한국의 프리랜서는 좁은 의미로 본다면 631천 명, 넓은 의미로 본다면 4,801천 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8월의 취업자 수가 25,291천 명이므로 프리랜서는 취업자의 2.5(협의)~19.0%(광의)이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하고, “독립적”인 만큼 프리랜서는 자신의 일(사업)에서 발생하

는 모든 위험을 스스로 짊어지되 그만큼 높은 수입으로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노동자 취급을 받는데, 대우 면에서는 자영업자처럼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양쪽이 가지는 대우는 둘 다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라도 쓰고 일하시는데, 그게 유효하든 안 유효하든. 저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방송피디 C씨의 면담기록 중에서 - 이승렬 외,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발간 예정)라는 고백과 같이 프리랜서의 일과 삶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이처럼 프리랜서가 직면하는 일과 삶의 위험에 대하여 외국은 어떠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밖에 프리랜서가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해결하는 미국의 사례는 본지 2007년 12월호(김성훈, 「미국의 프리랜서 노동조합」, 43~50쪽)에서 이미 다루었다. 사회안전망이란, 달리 말한다면 ‘연대’를 통한 위험의 분산이라 볼 때 연대의 주체는 프리랜서여야 한다. 그동안 만화가나 방송프로듀서 IT개발자 등 일부 직업에서 진행되었던 조직화, 최근 직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프리랜서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 등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관계에서 ‘을’의 지위에도 이르지 못한 채 ‘병’, ‘정’ 등 하도급 거래관계의 말단에 위치하는 프리랜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공정거래질서의 정립이야말로 프리랜서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안전망이기도 하다. 아울러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리랜서의 일과 삶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 어느 영화 시나리오작가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던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KLI**